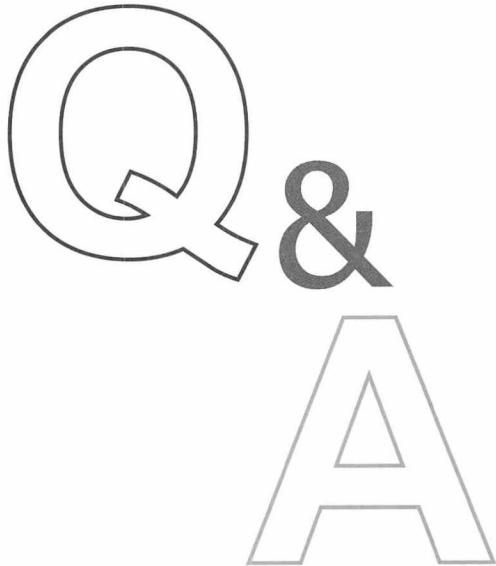


궁금합니다



Question | 지하역사에 설치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하역사 중 설치장소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의 설치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휴대용 비상조명등도 여기에 해당되어 면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 지하역사에 설치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지하역사의 승강장, 계단, 대합실, 피난통로 및 기타 사람의

피난이 필요한 공간 등을 말하며, 승강장을 기점으로 지상의 피난구에 이르는 각 부분을 보행거리 25m를 기준으로 3개씩 설치하여야 하며,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별도의 면제 규정이 없으니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26호) 제4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Question |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동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라는 소방시설의 설치 관련 법 문구에서 ‘유효범위 안의 부분’ 및 ‘동등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동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면 비상방송설비 설치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유효범위 안의 부분’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부설된 방송설비를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모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음향장치, 배선, 전원 등 또한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법하게 설치되어져야만 유효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4조(음향장치)의 기준에 따른 확성기 음성입력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W(실내에 설치된 것은 1W)를 말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경우 면제가 안 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동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됩니다.

Question | 건축물에 FILK 인증을 받은 소화기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율이 할인적용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소화설비할인은 소화설비규정(보험개발원)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으로부터 FILK인증을 받은 소화기를 설치할 경우 보험료율의 3%를 할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제조일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재충약된 소화기는 인증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FILK인증이 아닌 국가검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은 해당 할인율의 70%만 적용됩니다.

Question | 사람이 비상주하는 창고건물 신축 시, 화재발신기의 위치가 건물 내·외와 상관없이 규정에 맞게 시공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발신기에 대해서 건물 내부, 외부 등의 설치 장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발신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화재안전기준(NFC-72 5-9.2.4)은

건물 외부에 발신기를 설치할 경우 날씨로부터 내부 부품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 종전의 소방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동의된 건축물로서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종전의 소방법령(2004.5.30일 이전)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적용은 종전의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적용된 것으로, 귀 사처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 건축법적으로 EPS실 TPS(통신실)실은 수평 몇 수직 방화구획을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수직은 케이블 관통부위 주위에 화염막이 공사를 하는데 수평의 실 벽체도 내화구조로 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Answer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합니다. 단, 파이트 샤프트, 덕트, 스페이스 부분이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라면, 그 기능과 시공여건 등을 감안할 때, 매 층마다 바닥을 두어 방화구획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그 안의 층간 방화구획은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건설교통부 질의 및 회신, 1992.7.13)